

<별표 2> 정보기술부문 및 정보보호 예산 기준

1. 정보기술부문 예산 기준

가. 정보기술부문 예산 개요

- (1) 정보기술부문과 관련하여 기획·개발·운영·유지·보수 및 정보보호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의 합계
- (2) 정보기술부문 예산은 건물·시설 이용료, 건물·시설 공사비, 전기·전화 등 각종 세금과 공과금 및 사업성 경비는 제외

나. 정보기술부문 예산 항목

예산 항목	세부 내용
(1) 인건비	○ 정보기술부문과 관련하여 기획·개발·운영·유지·보수를 수행하는 내부 인력(정규직 및 계약직 포함)의 인건비 및 복리 후생비 등 관련 경비 일체 ○ 개인사무자동화기기(PC 등) 및 정보처리시스템을 단순 조화·이용하는 내부직원과 외부 주문·제휴에 따라 정보기술부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인력은 제외
(2) 정보처리시스템 구입비 및 임차료	○ 정보기술부문과 관련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 또는 임차(리스)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체 ○ 단순히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무자동화기기(PC, 프린터, 팩스 등)는 제외
(3) 정보처리시스템 유지보수비	○ 정보처리시스템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정상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체 ○ 정보처리시스템 관련 소모품 교체 비용 포함
(4) 정보기술 서비스이용료	○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기술부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체 ○ S/W라이선스비용, 기술이전·이용료, 정보이용료, 특허 사용료, 정보보호관제·인증·재해복구 등 정보보호서비스 이용료 포함
(5) 정보기술 외주 용역비	○ 외부 주문 또는 제휴 등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과 관련하여 기획·개발·운영·유지·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의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아웃소싱)하여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체
(6) 정보기술 컨설팅 비용	○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기술부문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문, 점검, 분석, 평가, 인증, 심사, 연구,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 ○ 감리비, 자문료, 취약점 분석·평가 비용, 품질인증심사비, 국

예산 항목	세부 내용
	제표준인증심사비 포함
(7) 정보기술 교육·훈련비	○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기술부문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교육, 직무훈련·연수 및 회의·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 ○ 도서·교재 구입비, 교육자료인쇄비, 인쇄비, 세미나·워크샵·학술발표회 등 회의·행사개최·참가비, 강사료, 직무교육프로그램 참가비·수강료, 직무훈련·연수과정(대학포함) 수업료 포함
(8) 통신회선 이용료	○ 정보처리시스템과 관련하여 정보의 송신, 수신과 정보처리시스템간 접속·연계를 위하여 정보통신사업자(인터넷서비스제공자 포함)로부터 인터넷, 전용회선 등 통신회선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체 ○ 재해복구센터용 통신회선 이용료, 디도스공격대응용 통신회선 이용료 포함 ○ 직원의 정보검색, 이메일 송·수신 등 사무자동화용으로 사용하는 통신회선의 이용료는 제외

*상기 정보기술부문 예산 항목이외 제2조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정보기술부문과 관련된 예산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2. 정보보호 예산 기준

가. 예산 개요

정보기술부문 예산중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경비의 합계. 다만, 정보기술부문 예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비는 제외한다.

나. 예산 항목

예산 항목	세부 내용
(1) 정보보호 관련 인건비	○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기획·개발·운영·유지·보수를 수행하는 내부 인력(정규직 및 계약직 포함)의 인건비 및 복리 후생비 등 관련 경비 일체 ○ 외부 주문·제휴에 따라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외주 인력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
(2) 정보보호시스템 구입비 및 임차료	○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 또는 임차(리스)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체 ※다. 정보보호시스템 분류표 참고
(3)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비	○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정상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정보보호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체 ○ 정보보호시스템 관련 소모품 교체 비용 포함
(4) 정보보호서비스 이용료	○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정보보호시스템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체 ※ 라. 정보보호서비스 분류표 참고 ○ 정보보호S/W라이선스비용, 정보보호기술이전·이용료 포함
(5) 정보보호 관련 외주 용역비	○ 외부 주문 또는 제휴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과 정보보호서비스와 관련하여 기획·개발·운영·유지·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의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아웃소싱)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체
(6) 정보보호 관련 컨설팅 비용	○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문, 점검, 분석, 평가, 인증, 심사, 연구,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 ※마. 정보보호컨설팅 분류표 참고
(7) 정보보호 관련 교육·훈련비	○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교육, 직무훈련·연수 및 회의·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
(8) 정보보호 관련 통신회선 이용료	○ 재해복구센터용 통신회선 이용료 ○ 디도스공격대응용 통신회선 이용료

*상기 정보보호 예산 항목이외 제2조 제5호의 규정에서 정한 정보보호와 관련된 예산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다. 정보보호시스템 분류표

대분류	소분류	세부항목
(1) 콘텐츠 정보보호	① DB정보보호	○ DB암호화

대분류	소분류	세부항목
		○ DB접근통제
	② 디지털저작권관리	○ 저작권 관리(DRM) ○ 자료유출방지(DLP)
	③ 개인정보보호	○ 정보보호서버 ○ 개인정보필터링 S/W
	④ 데이터백업	○ 데이터 백업·소산시스템 ○ 재해복구(DR)시스템
	⑤ 기타	○ 도청 및 감청 방지 제품
(2) 시스템 정보보호	① 사용자 인증	○ 정보보호토큰(HSM) ○ 정보보호스마트카드 ○ 일회용 비밀번호(OTP) 생성시스템 ○ 생체(Bio)인식시스템
	② PC 정보보호	○ PC정보보호관리 ○ 정보보호USB ○ 키보드해킹방지프로그램
	③ Anti-Virus/Spam	○ 바이러스백신(Vaccine) ○ 바이러스월(wall) ○ 안티 스파이웨어(Spyware) ○ 스팸(Spam) 차단 ○ 피싱(Phishing) 방지
	④ 접근통제	○ 정보보호운영체제(SecureOS) ○ 통합접근권한관리(EAM) ○ 싱글사인온(SSO) ○ 통합계정관리시스템(IM/IAM)
(3) 네트워크 정보보호	① 침입차단시스템	○ 네트워크방화벽 ○ 시스템 방화벽 ○ PC방화벽 ○ 웹방화벽 ○ 통합위협관리시스템(UTM)
	② 침입방지시스템	○ 침입탐지(IDS) ○ 침입방지(IPS)
	③ 가상사설망	○ VPN
	④ 전자서명	○ 공개키기반(PKI)
	⑤ 네트워크통제	○ 망접근제어(NAC)
	⑥ 무선·모바일정보보호	○ 무선랜정보보호 ○ 모바일 정보보호
	⑦ DDoS 대응	○ DDoS 대응(탐지, 차단)시스템
(4) 정보보호관리	① 정보보호관리서비스	○ 네트워크정보보호관리(NMS) ○ 위협관리시스템(TMS) ○ 위험관리시스템(RMS) ○ 기업정보보호관리(ESM) ○ 패치관리시스템(PMS)

대분류	소분류	세부항목
		○ 로그(log) 관리·분석 툴 ○ 취약점 분석·포렌식 툴

* 상기 정보보호시스템이외 제2조 제6호의 규정에서 정한 정보보호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라. 정보보호서비스 분류표

대분류	소분류	세부항목
정보보호서비스	① 인증서비스	○ 공인/사설인증서비스
	② 정보보호관제서비스	○ 정보보호관제서비스
	③ 재해복구서비스	○ 재해복구서비스
	④ 위협정보제공서비스	○ 취약점, 대응방안 등 정보제공서비스

* 상기 정보보호서비스이외 제2조 제5호의 규정에서 정한 정보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다.

마. 정보보호컨설팅 분류표

대분류	소분류	세부항목
정보보호컨설팅	① 정보보호컨설팅	○ 정보보호계획 수립·자문 ○ 정보보호표준 인증 심사 ○ 정보보호제품 시험·평가 ○ 정보보호 연구·개발 ○ 정보기술부문 감리
	② 취약점 분석	○ 취약점 분석·평가 ○ 모의 해킹 ○ 모의 훈련

*상기 정보보호컨설팅이외 제2조 제5호의 규정에서 정한 정보보호와 관련된 컨설팅을 포함할 수 있다.